

# 용역계약조건

## 제1조(총칙)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중소형조선소 전용 안전관리 기술개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_\_\_\_\_을 말한다.
3. “운영인력”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말한다.
4.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본 계약을 통해 새롭게 생산된 물품 및 유·무형의 결과물로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물품에 관련한 권리를 포함한다.

##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가격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가격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4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별첨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 제5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자”는 제7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연차별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的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的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검수)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과업이행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자”는 검수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的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的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 제8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계약자”가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②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지급을 면제 받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이후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的 지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자”的 동의를 받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지급수단으로 대체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的 요청을 불이행 한 경우
  4. “계약상대자”的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的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제10조(운영인력)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금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중도에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체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가 합의하거나, 심대한 업무태만과 개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자”가 투입인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영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운영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인력은 기 운영인력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교체합의나 요구가 있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인력을 투입하고, 원활한 과업진행을 위하여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운영인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계약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거나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경우도 이와 같다.

- ⑤ “계약상대자”는 운영인력이 본조의 의무나 책임에 대하여 불이행하거나 지연이행 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문서에 규정된 투입 인력의 인원 및 기간을 서면합의 하에 조절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용역의 수행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상호간 서면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①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제작된 보고서 및 매뉴얼 등은 “계약자”에 귀속되며, “계약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저작재산권 등의 분쟁 소지가 없어야 한다.
- ② 제작물이 저작권법 등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13조(특허 및 지적재산권)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3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기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계약자”를 방어하여야 하며, 해당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약의 해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 또는 진행이 되었을 경우
2. 주요재산을 양도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등 기타 거래정지를 당하는 경우
4.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 **제15조(계약의 해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상호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제16조(계약이행상황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계약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제17조(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 해지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결과물 등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 ③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가 본 계약과 관련된 결과물 이외에 반영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성 관계없이 해당)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계약자"가 확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20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제21조(기타)

-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성질상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존속되어야 하는 조항은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다.
- ③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당사자들 사이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 ④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